

# 定 款

주식회사 에스제이엠

# 정 관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(상호) 당 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이라 한다.

영문으로는 SJM CO.,LTD.(약호 SJM)라 표기한다.

제 2 조(목적)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1) 냉·난방기기의 설계제작 및 판매업
- 2) 냉·난방기기의 부속품 제작 및 판매업
- 3) 금속관 이음쇠 제조 및 판매업
- 4)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
- 5) 급·배수 위생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
- 6) 기계장치 및 치공구 설계, 제작 및 판매업
- 7) 각호 관련 수출입업
- 8) 해외제조 및 판매업
- 9) 전자,전기,통신기계,기구 및 그 부품의 제작,판매,임대 및 개발 서비스업
- 10) 정보 서비스업
- 11) 각호 관련 무역업
- 12) 환경 오염방지 시설업
- 13) 플랜트 설계, 제작, 시공업
- 14) 창고 보관업
- 15) 컴퓨터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대업
- 16) 부동산 판매 및 임대업
- 17)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
- 18) 전기통신 공사업
- 19) 통신 판매업
- 20) 스포츠용품 제조 및 판매업
- 21) 출판업
- 22) 건설업
- 23) 발전업

- 24) 조경공사업
- 25) 영화, 비디오, 음반 제작 및 판매, 배급업
- 26) 유기장업
- 27) 생활필수품 도.소매업(슈퍼)
- 28) 여행 및 알선업
- 29) 백화점 운영 및 임대업
- 30) 관광숙박업
- 31) 신용카드업
- 32) 주차장업
- 33)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(스포츠코너, 이온수기 및 건강용품)
- 34) 도료제조 및 판매업
- 35) 인터넷 전자상거래업
- 36)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

### 제 3 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

① 당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내에 둔다.

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사무소 및 출장소, 현지 법인을 둘수 있다.

제 4 조(광고방법)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sjmflex.co.kr>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## 제 2 장 주 식

제 5 조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,000,000 주로 한다.

제 6 조(일주의 금액)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00 원으로 한다.

제 7 조(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 당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,603,265 주로 한다.

제 8 조(주식의 종류)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 주식으로 한다.

제 9 조(주권의 종류)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오백주권, 일천주권,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.

제 10 조(신주인수권)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이사회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
1.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

2.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
3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

4. 상법 제 340 조의 2,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
5.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(DR)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
6.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,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,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
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제 1 호, 제 2 호, 제 2 호의 2,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

④ 제 2 항 제 1 호, 제 2 호, 제 5 호 및 제 6 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.

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.

#### 제 10 조의 2(주식매수선택권)

① 이 회사는 임·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 340 조의 2 의 각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

다만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할 수 있다.

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·경영·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·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 9 조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·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
1.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(상법 시행령 제 1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

2. 주요주주(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와 그 특수관계인

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

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  
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  
는 주식을 말한다)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
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,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,직원의 100 분의 50  
을 초과할 수 없고,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  
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상  
이어야 한다.

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

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 
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  
가

나. 당해 주식의 권면액

2. 제 1 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 1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 
시가

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.

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3 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⑨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.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
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.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
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
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 10 조의 3(신주의 배당기산일) 회사가 유상증자,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 11 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

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

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제 12 조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)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 11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

제 13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당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.

② 당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
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 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

### 제 3 장 사 채

제 14 조(사채의 발행)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4 조의 2(전환사채의 발행)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1.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
2.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3.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4.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5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
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
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

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과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5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1.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

2.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3.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4.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5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 제 165 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
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
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3 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6 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 11 조, 제 12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
## 제 4 장 주 주 총 회

제 17 조(소집시기) ①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
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 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제 18 조(소집권자)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
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9 조(소집통지 및 공고)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 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.

제 20 조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 21 조(의장)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
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2 조(의장의 질서유지권)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23 조(주주의 의결권)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.

제 24 조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) 당 회사,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

제 25 조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26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7 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제 28 조(주주총회의 의사록)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
## 제 5 장 이사 · 이사회 · 감사

제 29 조(이사 및 감사의 수)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②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.

제 30 조(이사 및 감사의 선임)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 
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 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

③ 이 회사는 이사선임결의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.

제 31 조(이사 및 감사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.

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 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.

제 32 조(이사 및 감사의 보선) ①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 29 조에서 정하는 員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사외이사가 사임·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9 조에서 정하는 員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33 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 이 회사는 이사회에의 결의로 대표이사 2 명이내,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.

제 34 조(이사의 직무)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4 조의 2(이사의 보고의무) ① 이사는 3 월에 1 회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5 조(감사의 직무) ①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④ 제 3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⑤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총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제 36 조(감사의 감사록)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 37 조(이사회 구성과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
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5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38 조(이사회 결의방법)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
② 이사회 의장은 제 3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

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39 조(이사회 의사록)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40 조(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
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 41 조(상담역 및 고문)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제 42 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
## 제 6 장 계 산

제 43 조(사업년도)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

제 44 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.비치 등)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대차대조표
2. 손익계산서
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
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

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
1.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
2.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

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
⑦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5 조(이익금의 처분)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1. 이익준비금
2. 기타의 법정적립금
3. 배당금
4. 임의적립금
5.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

제 45 조의 2(주식의 소각) 삭제

제 46 조(이익배당)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
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

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
제 47 조(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.

## 부 칙

제 48 조(준용규정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.

제 49 조(세칙내규) 당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.

제 50 조(시행시기) 이 정관은 제 6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6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51 조(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) 이 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의 회사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며, 동 분할로 인하여 이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2010 년 3 월 26 일자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의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의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.

제 52 조(사업년도에 관한 특례) 이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제 4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10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제 53 조(발기인) 이 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에서 인적분할을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.

이에 따라 이 회사의 발기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.

제 54 조(분할전 회사의 명칭과 발기인)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.

분할 전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이사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.

2010 년 3 월 26 일

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401 - 5

주식회사 에스제이엠

대표이사 강춘기